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

토론: 규제·혁신·경쟁력의 균형 모색

OCTOBER 23, 2025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과 조직개편 계획을 계기로, 한국의 경쟁정책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중장기적 규제 일관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집행과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에 부담을 주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을 조명하기 위해 ITIF는 한국어로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세션은 옥스퍼드식 형식을 차용하여 규제 격차 양측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각 발표자는 8분 분량의 발표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발표했고, 이후 청중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자동 생성 녹취록

Sejin Kim:

안녕하세요. 오늘 ITIF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경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과 조직 개편을 계기로 한국의 경쟁 정책이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상법과 공정의 역할 분담, 중장기적 규제 일관성 확보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이에 따라 ITIF 한국혁신경쟁력센터는 한국의 경쟁 정책에서 규제, 혁신 경쟁력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 플랫폼 규제, 기업 지배구조, 공정의 집행방향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국 시장에서 건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서강대학교의 홍대식 교수님,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교수님, 범부흥의인 태평양의 최휘진 변호사님,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김우진 교수님입니다. 네 분 모두 한국경쟁법 분야에서 저명한 분들이시죠. 오늘 먼저 시간 내어 고견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는 플랫폼 규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풀법은 대형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고, 미국 정부는 이 법을 자국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누어서 후자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경기 신임 위원장도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집행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위해 공정위와 별도의 전담 플랫폼법 제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제법 내에서의 지침 강화 혹은 자율 규제 유도 등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또 만약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면 그 적용 범위와 대상 기업의 기준, 공정위가 직접 집행해야 할 영역은 어디까지라고 보실까요? 먼저 홍대식 교수님, 이어 박경신 교수님, 최휘진 변호사님, 김우진 교수님 순서로 4분씩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홍대식 교수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Dae Sik Hong:

네, 4분이라는 시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패널에 초대된 분들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서 더 흥미로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주장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어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공정위가 갖고 있는 권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EU에서 말하는 그러한 새로운 법, DMA 같은 법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된다.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입법 논의를 보면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또 그런 걸 적용했을 때 기존의 법과 어떻게 교화를 이루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충분히 숙고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입법 논의는 EU에서 새로운 입법이 나오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문제가 우리나라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 왔는데요.

EU에서 이 법이 생긴 배경을 보면 EU는 일단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자국의 어떤 경쟁적인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주요 검색이라든지 또 SNS라든지 전자상거래 뭐 이런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빅티켓한테 시장을 지배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더군다나 EU의 어떤 경쟁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또 경쟁 제한이라는 측면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판단이 되게 어렵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EU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극약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암이 온몸에 번졌는데 지금 기존에 치료제 가지고 안 되니까 일단 이거 잡고 보자 해서 엄청난 지금 항암제 투여하고 방사능 치료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말 환자를 중환자실에 넣어서 아주 집중 치료해 줄 정도로 디지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 환경이 다른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 규모도 있고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몇몇 주요 분야들 검색, 전자상거래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이런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또 각종 거래 공정화법으로 EU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규제들을 공정위가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플랫폼 쪽에 확대시키겠다는 게 이제 입법의 취지인데요. 현재 갖고 있는 규제들을 가지고 과연 EU처럼 있는 치료 수단을 가지고 안 되니까 아주 집중 치료 수단을 도입해야 된다. 규격 처방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왔느냐. 그리고 정말 공정위가 이런 것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규격 처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급한 불응까지는 그래서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이런 주요 기업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주요 기업이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지만 국제 무대에 가서는 사실은 규모라든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결국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잘 아시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국내에서의 규모만 가지고 그거에 비교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의 영향력이 훨씬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기업들이 이제는 국내에서 같이 있지 말고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글로벌 진출해야 되는데 이런 규제 대응에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좀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ejin Kim: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신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Kyung Sin (KS) Park:

새로운 법을 만드느냐 마느냐는 조금 부차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 법들이 각각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열몇 개 법안이 나와 있고 또 이름이 각각 다른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라고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열몇 개입니다 그리고 법안이 나와 있죠. 그런데 두 가지 법안 모두 아직은 경쟁법 입법을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 법이 입법을 효율적으로 하는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경쟁법 학자분들은 이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해서 경쟁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또 네트워크 효과가 사실은 독과점을 만들기가 쉬운 그런 폐해가 있는데 사실은 바로 플랫폼은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 편익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플랫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나타나는 소비자 편익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독점 규제법 또는 기존 경쟁법 원리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 적용된 적어도 수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 분야에 경쟁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끼워 팔기랄지 이런 플랫폼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안들에만 적용되어 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경쟁법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 하면 적용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플랫폼에 경쟁법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들 이유들을 어떤 식으로 돌파할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플랫폼 공정화법도 그렇고 경쟁촉진법도 그렇고 어떤 행위들을 지금 저희가 봤던 플랫폼들 봤던 플랫폼 행위들 중에 불공정한 행위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식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앱마켓

Sejin Kim:

네 알겠습니다.

Kyung Sin (KS) Park:

인앱결제 강제법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현행법을 가지고도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연구만 마치면 사실 현행법 가지고도 경쟁법적인 규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ejin Kim:

네 너무 감사합니다. 최휘진 변호사님 4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Hwijin (HJ) Choi:

네 우선 이번 웨비나에서 토론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개거래 플랫폼 배달앱 등의 공정성을 다루는 공정화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그중에서도 거래상지휘남용행위 규제 등이 있고 오랫동안 잘 기능하여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휘남용행위의 규제는 거래상지휘남용행위의 특칙에 해당하는 법률들이 사실 이미 많습니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어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법률이 생겼는데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했을 때 어느 거래 관계에서 어떤 법률이 어느 행위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사실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리전법이 적용되는 거래인데 대리전법 거래면 대리전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시상의 미비점이 최근에 발견이 돼서 법원에서 대리점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하고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된다는 최근 판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여러 특별법이 서로 있다 보니까 다소 혼란이 이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법이 많은데 이 상황이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비용 그리고 리스크가 사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더 어려우면서도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냐. 그런 기준을 보다 정치하게 만들고 의미 있는 선례들이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비슷비슷한 행위인데 어떤 행위는 어떤 어떤 위법이고 어떤 행위는 그렇지 않고. 이게 어찌보면 랜덤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처럼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만 수범자가 법을 더 잘 알고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제법 체계가 있고 그런데 이를 좀 더 정치하게 적용하지 않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너무 집중을 해서 새롭게 별도로 법을 만들면. 당장 당장은 그걸 봉합을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합리성도 있고 상호 간에 윈윈해서 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행위도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상 충족을 위해서 상호 간에 계속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써야 될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 후생도 증대시킬 수 있는 행위. 그런데 그런 행위가 규제 리스크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안 하는 방향. 굳이 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다른 여류의 대안을 찾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유인이 될 수도 있는데 새로운 규제가 물론 우려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협력해서 상호성장하자. 왜냐하면 이 플랫폼 자체가 성장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여러 중소기업들도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유통 채널을 찾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합리적인 비율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자. 그러면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양쪽에. 그런데 그런 활동을 장려할 거냐. 아니면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고 세세하게 규제가 있는데 법 위반이다.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라도 문제를 제기해서 당장에 내 이익을 더 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인을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화 법률에서 수수료를 법령으로 일정하게 제한한다. 이 부분 이제 되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어떤 방식으로 거래 조건을 제한했을 때. 단기 품 이용 사업자에게 부담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에게는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Sejin Kim:

네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김우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Woojin Kim: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전형대 김우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신 네 분 중에 저만 유일하게 비법조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회사 관점 또는 시장 관점 투자자 관점 이런 퍼스펙티브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앞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랑 큰 방향에서 대부분 생각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홍대식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자국어 기반으로 한 검색엔진을 보유한 나라인데 네 개 밖에 없다고 그러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대한민국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유럽이 지금 굉장히 인도 일본도 그렇고요. 디지털 환경에서 잘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국 산업보호 내지는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 시장 침탈 이런 거를 방어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그런 움직임이 EU 쪽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음모론 좋아하는 어떤 분들은 ESG도 유럽에서 저거 무역 장벽으로 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 중심의 어떤 레귤레이션이 촉발한 걸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카피앤페이스트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검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생성형 AI 해가지고 신정부가. 우리가
쏘거린 AI 정책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플랫폼들의 어떤 그러한 향후 성장 방향이나 이런 것을
촉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지금 대형 플랫폼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조금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향의 신기 규제가 도입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최근에 우리가
플랫폼이 생성 생성형 생태계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켰던 사건이 뭐냐면 작년에 있었던 팀원
위메프 사태입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앞으로 발생하면 안 돼야 되고 저희가 그런 거에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 이게 네이버 카카오에서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도 여러 가지 온풀법 얘기도 있고 등등 있었습시다만 결국은 전자금융거래법하고 대규모
유통업법 이 두 가지 관련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일단 대응을 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대형 플랫폼들은 소형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상생을 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회사 말씀드려서 그렇습시다만 예컨대 엔모 회사 같은 경우에 정산 주기가 사흘로
단축돼가지고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업계 최저인데 그러니까 지금 입장업체들 입장에서
그렇게 대형 플랫폼에 배달앱의 일부 라이더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형
플랫폼들은 상생에 오히려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등등 글로벌 이런 플랫폼이 플랫폼들과의 경쟁을 조금 더 우리가 산업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Sejin Kim:

네,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핵심은 공정성 확보하는 목표와 법률의 형태, 적용 범위라는 수단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 같습니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확보도 분명
필요하지만 동시에 혁신과 시장 역동성을 해지해 치지 않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시다 네, 이제 그럼 플랫폼 이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최근 개정된 상법으로
주주권과 이사회 책임이 강화되면서 법원 중심의 사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죠. 한편
공정위는 오랫동안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내부거래 문제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관리해
왔습니다. 즉 지금은 법원 중심의 규제가 공정위 규제와 공정위 중심의 규제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두 축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가 쟁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원과 주주소송 중심의 규제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의 재벌 계열사 구조를 고려할 때 공정위가 여전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개입의 범위와 방식은 어디까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김우진 교수님부터 박경신 교수님, 최휘진 변호사님, 홍대신 교수님 순으로 여쭙겠습니다. 김우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Woojin Kim: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품법은 잘 모르고 이게 제가 원래 전공하는 분야라 질문을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공정위가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의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의 왜냐하면 우리가 민사적으로 주주보호가 굉장히 척박한 그런 환경 하에서 공정위의 어떤 그러한 부당 지원 행위라든지 이런 이게 모양은 좀 다릅니다. 전통적인 경쟁법 하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좀 꼬이고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개입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라는 점은 저희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동안의 공은... 사실상 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머더레이터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상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상장기업에서의 투자자 보호 이슈 널리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가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건 공정관리법이 아니고 회사법, 또 민사적인 구제 절차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소송, 대표 소송 집단 소송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논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공정위의 역할이 향후 만약에 민사적인 다른 나라에서 다 키워듯이 민사, 회사법을 통한 구제수단이 적절하게 잘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정위의 역할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공정위가 해온 거는 민사가 어색하고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거의 보완 역할을 굉장히 나름 열심히 해왔다 라는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공정위의 한계가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법이고 규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수험기업에서도 이거를 민사 이슈로 생각하지 않고 규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는 뭐냐면 회피하면 되거든요. 당당하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익 편치 조문에 보면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이쪽이 30% 이상 지분을 가지면 그거를 사익 편치 대상으로 해서 과징금을 매겼다. 그러니까 이제 29.99% 하고 5주 모자라는 그럼 29.99%가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시행령 법 바뀌가지고 그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추니까 그럼 주식 팔아가지고 19.99%로 하고 당당하게 왜냐하면 이건 규제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공정거래법에 이게 규율되는 한은 민사상의 이슈고 이게 우리가 주주에 대한 이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렵고 단순히 규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이제 물론 지금 사익 편치 조문이 들어와서 새로 조문이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전통적인 부당지원행위 조문으로 많이 이걸 규유를 해왔는데 부당지원행위 규모 그거는 교수님들이 적어도 훨씬 더 잘하겠지만 경쟁 제한성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투자자 보호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입증 책임이고 사안인데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대상 규율해야 되는 대상과 틀이 조금 어긋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됐습니다마는 이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걸 보가면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Sejin Kim:

네. 감사합니다. 박경신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Kyung Sin (KS) Park:

네. 경쟁법은 기업의 외부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거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재벌 규제는 기업의 내부적 지배 구조를 규제하려는 거라서 입법 목적이 좀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랐던 이유는 재벌 중심 경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너무 크다고 봤고 그리고 사실은 더 큰 이유는 상법상의. 그러니까 상법상의. 상법상의 상법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런데 회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법의 입법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그리고 소유와 경영분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법의 집행방법이 활성화됐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법상의 뭐랄까 회사 지배 원리에 대한 민사적 규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소수주주운동 등을 벌이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기대를 해왔던 것인데. 지금 사실 김우진 교수님 말씀이 이제 말씀에 법 원리적으로는 공감할 하는데. 재벌 규제가 틀림없이 재벌 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또 이번에 상당한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들의 권익이 사실 그 조문 바뀌었다고 하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형식상 법적으로는 더 강해졌는데 그런 것들이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가 사실은 대기업들이 외부적으로 경쟁법을 위반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부당지원 그리고 내부적인 지배원리의 위반 즉 사익 편취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계열사 밀어주기를 할 때 그 계열사의 총수의 친족이 앉아 있거나 결국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리어 부당지원이나 각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등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 판단으로는 재벌들의 외부적인 행포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규제를 했다면 내부적인 사익 편취 문제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됐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기한 면이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사익 편취 방지 목적 제목을 사익 편취 방지를 목적으로 하든 또는 부당지원 규제를 제목으로 하든 중요한 것은 조금은 더 강한 규제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금융 분야 또는 영상산업 분야 또는 방송통신 분야 등등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규제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규제기관이 있으면 금융이나 광통이나 또는 영진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독점 규제법 지평에 의해서 전문기관의 판단에 그냥 의존해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는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각 전문기관들은 또 그 분야에서 대기업들의 대기업들과 회전문 인사나 이런 식의 포섭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면이 있어서 제목을 뭐라고 붙이든 사익 편취 규제라고 붙이든 또는 부당지원 규제라고 붙이든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ejin Kim:

네,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최휘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Hwijin (HJ) Choi:

우선 부당지원행위 규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른바 사익 편취 규제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제에 있어서 사건들도 그동안 많았고 또 그 사안들이 매우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징금도 크고 게다가 또 여러 관련된 개인들의 형사처벌까지 문제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주요한 역할을 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위의 역할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당분간은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되고 또한 신정부 및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만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은 어느 정도는 최근에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이사회 책임 확대, 주주대표 소송 강화등으로 등을 통한 그런 법원 및 민간 중심의 체계로 전환이 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열 회사들과의 거래 관련을 해서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견제하고 보완 검토 등을 거친다면 그리고 그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추세가 더 강화된다면 그러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부당한 지원, 총수의 친족이 있어서 그 계열 회사랑 거래한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 배경에 따른 거래를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 가상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사회의 이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사내의 이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몇 시간의 거친 토론을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서 그러면 복수의 러퍼만 러퍼를 각자 선정해서 객관적인 검토 의견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한 달 후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한 달 후에 이사회에서 러퍼들이 이사회에 출석을 해서 PT 발표를 하고 문답을 하고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토론해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때 과연 그러한 결론을 외부의 시각으로 아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점점 더 정착이 되면 그것이 공정위의 조사나 제재와 같은 외부적인 힘을 통해서 거래를 개입하거나 바꾸는 모습보다는 더 바람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소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주주대표 소송의 역할도 확대되고 또 케이스도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각 이사 입장에서는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실무에서도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공정위의 역할 어떠한 판단자로서의 역할은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는 이제 공정위의 어찌보면 두 가지 체계인 거죠 김우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잘 작동을 잘 안 했던 그런 체계가 이번에 좀 더 활성화되고 그것들이 공정위 중심의 그동안의 체계와 잘 공존이 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Sejin Kim:

감사합니다 홍대식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Dae Sik Hong: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한 오늘 다른 분들 말씀을 듣고 얘기할 수 있는 작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 지배구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사법의 역할하고 공정위의 역할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법 그리고 확대된 자본시장법의 구조는 물론 모회사 자회사 이 정도의 관계는 있지만 한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 모회사 문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기업 집단의 실체를 잘 볼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집단 지배구조는 기업 집단이 그 내에서 어떤 식으로 기업 간의 관계 그리고 흔히 총수라고 말하는 이런 어떤 지배하는 그룹에서 어떤 식의 소유구조로 어떤 지배구조를 만들 것인지 이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그런 기업 간의 관계가 것인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회사법이나 회사법에 관련된 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까지도 과연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기업 집단 규제라는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대처해 왔는데요 분명히 상법 개정으로 회사 내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상법이 많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사회 내에서 기업 내 의사결정에 영향도 미치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손을 가지고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업 쪽에서 많이 안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좀 더 사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까지도 깊숙이 관여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조금 이제 공정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집단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공정의 규제 기업 집단 규제가 경제법과 무관합니다 아까 경쟁자성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쟁자성은 문의에 불과합니다 거의 경제에서 있는 것을 추정해 가지고 해왔고 그런데 알다시피 부당지원 행위에 규제하다가 막힌 분들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규제가 가능한데 특수관계인 개인을 지원하는 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편집 규제가 나왔던 것인데 거기서 정말 경쟁자성과 무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행태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게 규제가 우리나라가 IF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으면서 기업 집단들도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을 키우는 것이 능상적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충돌하고 측면이 공감이 됐고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업들은 지배구조가 다르고요 근데 여전히 옛날 낡은 규제로 똑같이 회계적인 규제하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어떤 새로운 모델 선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접해본 기업집단 사람들도 뭔가 우리 지역단 구조를 선진단 시장에 맞게 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맞게 어떻게 발전시킬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맞춰야 되거든요 아무리 잘해봐야 똑같은 규제 받는데 어떤 유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집단 규제 틀 자체도 이게 정말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지향하기 위한 규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유인체계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Sejin Kim: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지배구조 개혁의 주체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됐습니다. 한편에서는 법원과 주주의 중심의 자율적 규율을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위의 공공적 역할도 강조하셨는데요 결국 핵심은 투명한 지배구조와 시장 실내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정위의 집행절차와 향후 제도적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부족이나 방어권 제약 등을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많은 미국이나 EU처럼 조사 과정에서의 증거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죠 또 한국은 OECD 주요국보다 형사 고발 비율이 높고 익명 제보로 시작되는 조사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어떤 조사 집행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또 이중 처벌이나 반복 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국제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모델을 주목해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건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위, 정부, 기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경신 교수님 사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Kyung Sin (KS) Park: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뮤트가 풀어졌고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부당지원 규제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SK텔레콤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경쟁이 치열할 때 자신 계열사인 11번가의 트래픽에 대해서 제로몰 제로레이팅을 합니다 즉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경쟁에 있어서 자기 계열사에 대해서만 이용자들이 11번가에 갈 때는 그러니까 모바일로 갈 때는 모바일 트래픽이 이용 쿼터에서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룰을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곧바로 11번가는 온라인 쇼핑몰 업계 2위가 됩니다 11번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업계에 새로 참가하자마자 2위가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진정도 들어가고 또 인터넷 트래픽에 관한 공정거래법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망중립성상의 비판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죄송합니다 과기부였을 겁니다 과기부의 의견을 구하고 거기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조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상황 보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아직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기부나 방통위 같은 전문기관은 그 산업 분야 내의 특수한 그런 정책적인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는 공정위의 본연의 목표가 있고 그 입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화 부분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질문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상당히 지금 약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 계속해서 공정위의 어떤 조사권 등의 강화는 계속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민사 규제에 있어서 집단소송법 그리고 경쟁법에 있어서 소비자소송이 지금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거개시제도의 강제성 이것 역시 피고 측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특히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ejin Kim: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휘진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Hwijin (HJ) Choi:

공정위가 조사 절차 규칙을 여러 차례 개정을 해오면서 피조사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온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디테일하긴 하지만 디지털 포렌직이라는 걸 하는데 현장 조사를 나와서 자료 삭제와 같은 그런 조사방해 같은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물리적 방식의 이미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혐의 조사 대상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들만 별도로 추려서 그러한 자료들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포렌직 영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실무상 원칙이 최근에 좀 정립된 것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조사 업체의 준법 지원 부서 즉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부서는 조사 대상 부서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준법 지원 부서에서 법 위반 혐의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이건 많지는 않은데 이 회사가 크지 않아서 준법지원부서가 전략기획 업무도 같이 수행한다. 이럴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제외된다. 이런 것들도 바람직한데 다만 이게 아무래도 5일, 보통 일반적으로 5일 아니면 4일 이렇게 한정된 현장조사 기간 내에서 혐의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혐의 관련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떤 폴더 단위로 디지털 영치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의 하드디스크 전체에 대한 디지털 영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여전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디지털 자료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런 절차를 속에서 파일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선별해서 제외한다는 것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 최근에는 다 자료들이 다 디지털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영치의 첫 단계부터 좀 더 신중하게 영치가 이루어지고 자료의 양도 무조건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조사 업체, 피조사 대상 회사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아니면 RFI를 통해서 자료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3자로부터 받는 자료들로서는 제3자로부터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심사보고서에 첨부 자료로 첨부되는 자료 외의 다른 여러 자료들도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심사관 측에 유리한 자료,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한, 해서, 증빙이 되는 자료만 관리가 되고 제시되는 그런 유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체계화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피시민들이 어떤 방안권 차원에서 열람 복사 청구를 할 때, 영업비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유를 들어서 열람 복사 청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비밀 유지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가 법으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비밀 유지 의무만 부과하고, 비밀 유지에 대한 권한은 특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위 현장 조사 및 디지털 포렌즈 선별 과정에서도, 사실 실무상으로 이런 자료가 과연 영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냐, 그것들이 애매한 경우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이 어떤 기업 스스로의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유인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또 검찰 수사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어떤 규정이 아직까지 미비해서, 그런 자료들도 다 수사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Sejin Kim:

네, 감사합니다. 김우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Woojin Kim:

네, 사실 마지막 질문도 약간 굉장히 legal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좀 제한적이지만, 일단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형사처벌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이해진 네이버 지하요가 고발당하고 그랬는데, 뭐 사전에 8천 회사를 누락했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법을 바꿔서, 그걸 뭐 6천, 4천 이렇게 바꾸기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이런 신고 누락 등등에 대해서도 형사고발되는, 그래서 경제사범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게 형사처벌되는 측면이 있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갑자기 너무 또 여당에서 급하게 배임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역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사 부재가,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배임이 아예 형사가 아닙니다 아니니까요 영미법에서는 배임은 다 민사로 하는 나라들도 많아서, 그 아주 초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저희가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민사 부재는 시작이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아주 초기 당인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더 확 지금 배임죄 폐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거래법에서마저도 그렇게 하는 거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그 뭐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지 꼭 집행과정은 아닌데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심사지침 중에 보면, 예전에는 내부거래를 규제할 때, 그 지원기업과 피지원기업의 어떤 소유지배 구조를 전혀 보지 않고, 이게 완전자회사든, 아니면 총수가 100% 가진 회사든 간에 구분을 안 뒀는데, 이걸 구분을 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완전자회사는 사실상은 주주 관점에서는, 그 사업부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당지원이 성립하기가 좀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 대신에 이제 뭐 이게 총수 일가가 100% 가진 거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부거래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걸 이제 동일한 잣대로 지금까지는 봐왔는데, 최근에 공정거래위가 이거 지침을 바꿔가지고,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는 걸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지에 있어서, 지원기업이 있고 피지원기업이 있어요. 피지원기업은 수혜기업, 그리고 이제 지원기업은 피해기업인데, 이쪽으로 이제 뭐가 갔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과징금 부과체계는, 그 지원, 피지원기업만 매기는 게 아니고, 지원기업한테도 과징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뇌물 같은 데서 보면, 받은 사람도 나쁘지만 준 사람도 나쁘다. 그래서 양쪽을 다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보면, 지원기업 주주 입장에서는 이미 민사적으로도 한번 손해를 봤는데, 어 과징금도 또 이걸 내야 되니까, 두 번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것들은 이 지원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조항이, 옛날부터 경제력 집중 업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 업재가 완전 금고 업적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 안 되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 좋느냐, 지금 우리가 직접 주주만 해도 500만 명이 넘어가고, 진짜 삼성전자가 잘 돼야, 국민연금도, 투자 수익도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80년대 중반에 했던 경제력 집중 업재라는 정책 목표가 맞는지, 헌법에는 경제력 남용 방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경제력 집중 업재는 없고, 그러면 진짜 경제력 남용 방지에 입각한, 그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네,

Sejin Kim: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대식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ae Sik Hong:

네, 시간도 딱 4분 남았는데, 2등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위의 조사 절차의 공정성 이슈를 먼저 제기해 주셨는데요. 최희진 변호사님이 현재 공정위가 조사 절차를 개선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절차라는 것이 법률가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적법 절차와 또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 이 법률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 공정위가 하는 일이 만일에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정위가 그런 법률적인 기본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그동안의 문제제기였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정위가 너무 하는 일이 많습니다. 흔히 다른 나라 경쟁 당국과 비교하지만, 재벌 규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거래 공정화 규제도 그렇고 소비자 보호도 그렇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이제 로테이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위 공무원들은 사실은 본인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지만, 또 본인이 인정받기 위한 인젝티브가 자격을 하게 하니까, 그 각 공정위 정부들마다 어느 쪽이 좀 더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빨리 하고 또 조사를 많이 하고 이런 데 오리엔티되다 보면 절차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리고 차근차근히 하는 것을 일찍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민사 절차에서도, 통사 절차에서도 사실 신속한 공정은 정말 부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두 가지 상승된 목표거든요. 지금은 절차를 강조하지만, 또 여러 가지 공정위의 디멘팅 안주가 많게 되면 어떤 식으로 또 잡힐지 모르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사실은 공정위가 집중해야 될 일을 조금 더 다운사이징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거래 공조항 같은 거, 프랜차이즈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은 프랜차이즈를 연방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 주 정부에서 합니다. 연방 정부는 이거는 전체적인 감동만 하고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데 좀 더 넘겨주고 공정위는 좀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조사와 판단이 사실은 막 섞여 있는데요. 인력이 돌고 있고 사실은 공정위가 법원 같은 1심을 대신하기 위해서 뭔가 그걸 잘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부하거리는 상태인데 저는 차라리 공정위가 법원의 1심을 대신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공정위는 좀 확실하게 좀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영국의 항소 심판소처럼 아예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드는 것이 역할 분담도 제대로 하고 공정위가 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너무 모든 걸 잘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존재한 사건을 다 잘하려고 하는 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Sejin Kim:

네 네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공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낮추는 것이었는데요. 플랫폼 규제에서는 혁신과 공정의 균형 지배구조에서는 자율과 책임의 균형,

집행 절차에서는 감독과 신뢰 간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 메시지였죠. 공정위가
규제의 목적을 통제가 아닌 신뢰 구축으로 전환해 국제적 신뢰와 시장 역통성을 함께 높이는
제도적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의 패널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ITIF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e Sik Hong: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